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80
----------	-------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박상웅 · 김상훈 · 김은혜
김대식 · 박준태 · 윤한홍
김미애 · 고동진 · 나경원
이철규 · 권성동 · 이현승
최보윤 · 김재섭 · 이종욱
이달희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특허와 같이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적시에 정정심판 청구를 못할 경우 권리 방어권 행사를 통한 특허권의 안정적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되, 정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정정심판으로

인한 권리변동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제133조의2 및 제136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3제3항 전단 중 “제13항까지”를 “제14항까지”로 한다.

제133조의2제4항 전단 중 “제13항까지”를 “제14항까지”로 한다.

제136조제8항 본문 중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를 “질권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⑭ 특허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청구 사실을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정심판에서의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규정 삭제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제136조제8항 본문(제132조의3제3항 또

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133조의2제4항을 준용하는 제13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14항, 제132조의3제3항 및 제133조의2제4항(제13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 6항까지,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⑤·⑥ (생략)

제136조(정정심판) ① ~ ⑦ (생략)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

제14항까지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6조(정정심판)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질권자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⑨ ~ ⑬ (생략)

<신설>

⑨ ~ ⑬ (현행과 같음)

⑭ 특허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청구 사실을 제100조제4항
· 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
실시권을 갖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